

이사회 규정

2025. 12. 18.



전 문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이사회는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이 ‘구성원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의 정관 전문에 반영된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경영철학의 실행]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SK 고유의 기업 문화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Brand 보유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와 기업문화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K Brand와 기업 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 실행하도록 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 2 장 구조

제 3 조 [구성]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
 - 2. 인사위원회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따라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포함)
 - 3. 전략·ESG위원회
- ③ 제2항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4 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의 임기는 선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 까지로 한다.
-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또는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임시 의장직을 수행한다.
 - 1. 전략·ESG위원회 위원장
 - 2. 감사위원회 위원장
 - 3. 인사위원회 위원장
 - 4. 대표이사(복수일 경우 연장자 순)
 - 5.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복수일 경우 연장자 순)

제 5 조 [간사조직 및 간사]

- ① 이사회의 간사조직은 [이사회사무국]으로, 간사는 [이사회사무국장]으로 한다.
- ② 간사조직 및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

제 3 장 회의

제 6 조 [연간 이사회 일정의 수립]

회사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당해 연도 12월까지 차년도 연간 이사회 개최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의장소 등]

- ① 이사회는 회사 본점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정하는 기타 장소에서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도 이와 같다.

제 8 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소집통지]

- ① 이사회 소집통지는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간사가 회의일자, 장소, 목적사항을 이사회 심의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와 함께, 회의일보다 적어도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집통지는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제1항의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을 할 수 있다. 단,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 할 경우 이사회는 보고안건을 의결안건으로 변경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최될 수 있다.

제 10 조 [의안 제출]

- ①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 의안과 그 제안 이유(이 규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적어도 이사회 회의일 10일 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이사회 간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간사는 제1항의 의안을 접수하면 법적 사항 및 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 4 장 이사회 및 이사

제 11 조 [이사회의 역할]

- ① 이사회는 법률 및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을 지시/감독하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1, 2항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 구성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사회의 책임]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아래와 같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권한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1. 장기 및 단기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
 2. 대표이사에 대한 선임/해임 및 평가, 직무집행의 감독, Succession Plan 수립
 3. 사내·외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
 4. 회사의 Risk Management System 및 활동에 대한 평가/감독
 5. 기타 회사 또는 주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 ② 이사회는 전 항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이사회의 권한]

- ① 이사회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진다.
- ② 이사회는 제12조에 규정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장기 및 단기 경영전략(KPI 포함)의 수립 및 평가
 - 2. 대표이사에 대한 선임/해임 및 평가
 - 3. 사내·외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
 - 4. 회사의 Risk Management System 및 활동에 대한 평가/감독
 - 5.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이사회 부의를 요청한 사항
- ③ 이사회는 제1, 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 13 조의 2[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

-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권한 사항 중 일부를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규정된 이사회 의결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14 조 [이사회의 대표이사에 대한 권한 부여]

- ① 이사회는 매년 의결을 통하여 차년도 일상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②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부여한 권리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하여금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매 연말 대표이사로부터 권한 집행 결과를 보고받고,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 부여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제14조 각 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사회의 권한 사항과 위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부여한 업무 권리의 세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5 조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 ①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 의결 사항의 집행,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항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책임진다.
- ② 복수의 각자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각 대표이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업무 분장 내용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각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간 협의를 통해 개별 업무를 결정 및 집행할 수 있다.
- ③ 대표이사 회장은 SKMS(SK Management System)에 기반한 SK그룹(이 규정에서 'SK그룹'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SKMS를 근간으로 한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경영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회사들로 구성된 회사들의 집합을 의미한다)과 경영 철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실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아래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대외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SK그룹 구성원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2. 대내적으로 SK그룹 소속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언·경영 자문 등을 제공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다만, 그 조력 사항의 반영 여부는 SK그룹 소속 회사가 각 사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책임과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16 조 [대표이사의 권한]

- ① 대표이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매년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차년도 일상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업무 권한을 임직원(CIC 조직의 長을 포함한다)에게 순차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 ③ 대표이사는 부여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에 매 분기별 경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집행한 결과를 매 연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② 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 내 담당 임직원이 작성 또는 제출한 품의서, 통보서, 보고서 및 각종 회계자료 등과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외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 그리고 회사 내 각종 전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사가 이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는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는 당해 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의 직을 사임토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 ⑥ 이사는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이사는 업무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⑧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이사가 본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심의 · 의결

제 18 조 [자료제출 요구권 등]

-
-
- ① 이사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 외부인사 등에게 이사회 출석, 관련자료의 제출 및/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9 조 [의결의 채택]

- ① 이사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사 전원의 과반수를 회의 정족수로 한다.
- ② 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모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며, 준법통제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준법지원인의 해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가 전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사록 등]

- ①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의사 경과 요령과 채택된 결과 및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를 주재한 의장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사 및 위원이 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② 이사회 부의 안건과 의사록은 이사회 간사가 이를 보존한다.

제 6 장 이사회 평가

제 21 조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외부 기관 등에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1. 1.)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2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1.)

-
-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9조 및 제10조에서 사용하는 자기자본과 자산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른다.
 - 1.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최근 사업연도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반영한 금액)
 - 2.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부 칙 (2012. 3. 23.)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5.)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기자본과 자산총액은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2017. 2. 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25.)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0호의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30.)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